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의안 번호	1440
----------	------

제출년월일 : 2012. 10.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나. 협의회는 아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
- ▶ 경기도 여주군,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 경상북도 문경시(안 제3조)
- 다. 산업·문화·관광·교통 등 분야별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안 제4조)
- 라. 협의회는 의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충주 시장, 여주군수, 원주시장,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 문경시장순의 윤번제로 하되 최초 의장은 충주시장이 한다. (안 제5조와 6조)
- 마.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1. 경기도 여주군
2. 강원도 원주시
3. 충청북도 충주시
4. 충청북도 괴산군
5. 충청북도 음성군
6. 충청북도 단양군
7. 경상북도 문경시

제3조(협의회 사무소) 협의회 사무소는 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제4조(협의사항) 본 협의회는 구성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한다.

1. 산업, 문화, 관광, 교통 등 분야별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 화합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민간단체 포함) 각종 축제·행사 참여 등 교류 활동 전개
5. 지역 농·특산물 공동판매를 위한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경기도 여주군수, 강원도 원주시장, 충청북도 충주시장,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 경상북도 문경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괄 간사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담당 실·과장이 되며, 회의운영의 기록관리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의장) ① 의장은 충청북도 충주시장, 경기도 여주군수, 강원도 원주시장, 충청북도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 경상북도 문경시장 순의 윤번제로 하며, 최초 의장은 충주시장이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며, 전체 위원이 참석한다.

③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되, 협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참석대상으로 한다.

④ 의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전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회의개최 결과를 관계 위원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결과 처리) 본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사항의 조정)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개최를 요구한 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안건 의결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리인에게 토의·표결 권한을 부여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담당 실·과장과 안건 관련 실·과장으로 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 중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안은 실무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이 속하였거나 회의를 소집한 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담당 실·과장이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된다.

제12조(경비부담)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제13조(사무 인계인수) 의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의장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4조(규약개정) 회원 전원이 필요로 하여 찬성하면 본 규약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

제15조(보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